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보완 지침

1. 관련

- 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송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15, '17.7.21)
- 나.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송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14, '18.6.1)
- 다.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공공기관노사관계과-2195, '18.11.1)

2. 추진배경

- 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불공정 채용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 결과발표('19.2.20) 및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19.9.30)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나. 이에 정규직 전환이 보다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전환 절차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달하고자 함

3. 현행 가이드라인 상 전환 · 채용 관련 주요 내용

- 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17.7.20)」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
 -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환 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추진
 - 2)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

나.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는 현재 근무 중인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여타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함

* ①전문직 등 선호 일자리, ②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③업무 특성상 이에 준하여 공개경쟁을 실시할 합리성이 있는 경우

- 1) 이 경우 경쟁 방식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점부여, 제한 경쟁 등 비정규직 보호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4. 『채용 단계별』 채용의 공정성 확보

< 주 요 내 용 >

❖ **전환심의기구***에서 전환 결정 논의시 청년선호 등에 따른 채용방식, 채용 절차 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기준 마련

* 전환심의기구(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 결정 논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

** 특히, 가이드라인 발표일(1단계 '17.7.20, 2단계 '18.5.30) 이후 채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전환대상자가 아니므로, 더 엄격한 전환·채용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 **향후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사전 안내**

* 부정합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19.2.20)

❖ **'17.5.12 이후 채용된 비정규직에 대해서 종전 파견·용역 회사의 경력증빙 자료(기간제 제외),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추가면접 실시 등 검증 강화**

가. 전환 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

- 1) 우선, 해당기관 및 민간 파견·용역업체에 친인척 채용 등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채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해당기관 및 파견·용역업체 임직원들에게 공지
- 2) 전환심의기구 논의시, 전환결정과 함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선호 등에 따른 채용방식, 채용시기에 따른 전환 여부 및 채용절차 등에 대해 자체 기준을 마련

* 전환심의기구(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 결정 논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

** 특히, 가이드라인 발표일(1단계 '17.7.20, 2단계 '18.5.30)이후 채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전환대상자가 아니므로, 더 엄격한 전환·채용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3) 이후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 전환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는 경우에는 그간의 협의 상황을 존중하되, 이후 단계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나. 전환·채용단계

1) 전환 또는 채용 관련 공지 시, 향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사전 안내

* 부정합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19.2.20)

2) '17.5.12 이후 기관이 채용한 기간제노동자나 파견·용역업체가 채용한 노동자 등 전환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검증 단계를 아래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적용함

① '17.5.12 이후 전환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파견·용역업체 등으로부터 사전에 확보하여 실제 전환자 결정 및 채용시 특별관리 및 엄격한 검증 실시

* 채용단계 이전에, 협력·용역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전환대상 근로자와 개별 접촉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② 검증방법은 기관별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되, 채용일을 확인하기 위해 전환대상자 전원(기간제는 제외)에 대해 종전 파견·용역회사의 경력증빙 자료 제출

- ③ '17.5.12 이후 전환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 경로,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첨부토록 함

* 공정채용 확인서는 기관특성에 맞게 마련하되,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

- 3) 한편, 경쟁방식에 의한 채용의 경우, 현행과 같이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유지하되, 최종 합격자 중 '17.5.12 이후 전환대상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종전 파견·용역 회사의 경력증빙 자료(기간제는 제외) 및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채용경로 및 친인척 여부 확인 등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진행
- 4) '17.5.12 이후 기관이나 파견·용역업체에 채용된 경우가 전부 불공정 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전환채용에서 제외하여야 함

다. 전환·채용이 완료된 경우

- 1) 전환이 완료된 기관의 경우에는 전환추진의 안정성도 감안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결정과 전환은 인정하되, '17.5.12 이후 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종전 회사의 경력증빙 자료(기간제는 제외) 및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채용경로 및 친인척 여부 확인 등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진행

5. 기타 행정 사항

가. 정규직 전환 및 채용과정에서 친인척 등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 및 압력 등의 행위가 있거나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환 제외, 전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고, 관련 자에 대해서는 법령·규정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함

나.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들에 대해서는 기관 또는 상급기관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되, 향후 주무부처에서 추가적인 방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조치해야 함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 및 주무부처는 채용비위 근절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적정여부 감사, 비위 사실 확인 시 경영평가 불이익·해임·채용자 합격 취소 등 조치 가능

다. 전환대상자 및 전환자로부터 친인척 여부 등 개인정보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 (개인정보 동의 내용) ①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②개인정보 조사항목, ③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⑤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라. 전환결정 이후의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적용함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1825, '19.12.11)

1. 조사결과

- 전체 182건 중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
 - 유형: ①전환기준 절차 위반: 8건, ②전환평가 없이 임의 전환: 7건, ③전환 대상자 선정 오류: 3건, ④기타: 6건
 - 시점: ①정규직 전환 지침('17.7.20.이전) 위반 18건, ②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이후) 위반 6건 등
 - 기타: 친인척 특혜 의혹 전체 16건 중 1건(수사의뢰)

2. 수사의뢰 주요 사례

- 간부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非상시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채용계획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전환자 선정,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정인을 정규직으로 전환